

목 차

1. 이전가격의 하락에 따른 관세환급----- 1
2. 관세 및 행정비용 면제로 인한 비용절감 혜택----- 2
3. 중간거래자의 비용 및 이윤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3
4. 수입물품이 실제 유통되는 시점까지 관세보류 및 면제의 혜택----- 4

최근 미국 관세청은 기존의 이전가격 하향조정에 대한 관세환급을 부인하던 관행을 뒤엎는 새로운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수입시점 이전 본지사간의 이전가격정책 존재여부 등, 관세청의 5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정된 이전가격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주요 관세 절감 프로그램

KPMG 는 본지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 만한 미국 관세제도 및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이전가격의 하락에 따른 관세환급 (Downward Transfer Pricing Adjustment)

본지사간 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 혹은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을 형성하는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관세측면에서도 이전가격조정의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세측면에서 이전가격조정은 수입물품 가격의 변동을 뜻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전가격은 분기별 또는 연간 정산에 따라 누적된 금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물품 수입 시점에서 조정된 이전가격으로 신고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CBP 는 과거 5 년까지 발생한 이전가격의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인상된 금액분에 대한 관세를 지급할 것을 정하고, 반대로 하향조정된 경우, 가격하락분에 대한 관세는 환급해 주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왔다. 최근에 이러한 관행 및 관련 유권해석을 뒤엎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2012 년 5 월 30 일자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미국관세청이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해 과세가격이 소급하여 하락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BP 는 관세환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지사간 거래에 객관적 공식 (“objective formula”) 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객관적 공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 개의 요건(Five Factors)이 충족될 때 증명될 수 있다.

Five Factors	
1.	IRC Section 482 에 준하는 본지사간의 이전가격정책(TP Policy)이 수입시점 이전에 존재해야 함.
2.	동일한 TP Policy가 미국법인세신고에도 적용되어야 함.
3.	TP Policy의 세부 내용으로는 이전가격 책정 및 조정방법 그리고 적용대상 물품이 명시되어야 함.
4.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상에서 이전가격조정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5.	이외에도 관세청이 이전가격 조정을 승인하는데 문제시 될 사항이 없어야 함. 예컨대 조정된 가격이 정상가격 (arm's length price) 이어야 함.

회사는 이전가격 조정에 의한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관세환급부인이라는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2. 관세 및 행정비용 면제로 인한 비용절감 혜택 (Free Trade Agreement)

한-미 FTA 하에서 관세 및 MPF 면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시스템적으로 각 완제품 및 원자재의 원산지 및 원가정보를 확보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인한 관세혜택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판정에 따라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수입 건 별 지급해야 하는 Merchandise Processing Fee (행정비용) 등의 비관세장벽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혜제도가 그렇듯이 한-미 FTA 역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미국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설 수 있겠지만, 원산지를 잘못 판정하는 등 규제를 어기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하여 페널티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관세청은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또는 실사를 통해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바 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데, 2001 년 미국 포드차는 멕시코산 부품의 원산지 미입증으로 4100 만달러, 2006 년 파이오니어사는 멕시코산 스피커의 원산지 기준 미충족 등으로 3700 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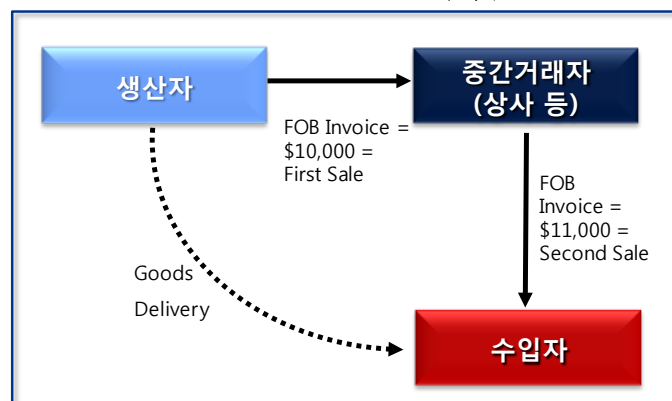
그렇다면 기업들이 FTA 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하면 (1)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2) 입증자료 보관이다. 회사는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및 원가정보를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세관의 사후심사(Audit) 또는 추가질문(CF28)에 대비해 언제든지 정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하나의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하나의 원재료만 사용된다면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 기업들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 및 원재료의 소싱(sourcing)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재료들에 대한 원산지 정보 및 원가정보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자체적으로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 중간거래자의 비용 및 이윤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First Sale for Export Program)

해외의 판매자가 생산자가 아닌 상사인 경우, 수입자는 보다 낮은 생산자의 가격으로 과세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bona fide sale, clearly destined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First Sale for Export(FSE)는 수입자가 생산자가 아닌 중간거래자(상사 또는 본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입 시 중간거래자의 판매가격(second sale price)보다 낮은 생산자의 판매가격(first sale price)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때 first sale price 란 생산자가 중간거래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second sale price 에서 중간거래자의 이윤 및 추가비용 등을 제외한 가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중간거래자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10,000 에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11,000 에 재판매 하는 경우, 수입자는 구입가(second sale price)인 \$11,000 가 아니라 생산자가 가격(first sale price)인 \$10,000 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First Sale Flow Chart – 거래구조



미국 이외에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뉴질랜드 정도의 소수의 국가에서만 FSE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아직까지는 생소한 제도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의류업체처럼 수입관세율이 높거나, 자동차업체처럼 수입단가가 높은 산업 등을 위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FSE 을 적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3 개로 요약이 가능하다. 첫째, 수입자와 중간거래자간 및 중간거래자와 생산자간의 각 판매단계 별로 정당한 거래(bona fide sale)가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입제품이 수입자의 주문에 의해 미국으로 수출될 것을 사전에 알고 제작되어 판매된 물품(clearly destined)임을 전체 판매 프로세스에서 단계별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와 중간거래자가 관계사인 경우, 상호거래된 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입물품이 실제 유통되는 시점까지 관세보류 및 면제의 혜택 (Foreign Trade Zone)

Foreign Trade Zone 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외국물품을 미국 내 창고 또는 공장으로 반입하여 보관 또는 가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도는 미국의 보세제도(FTZ: Foreign Trade Zone)이다. 이는 외국물품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 내 FTZ 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관세 및 제반 비용(Merchandise Processing Fee 및 통관관세사비용 등)이 FTZ 에서 반출되는 시점까지 연장되거나, 해외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아예 면제되기도 한다. 물품의 형태는 FTZ 로 반입된 그대로 보관한 형태이거나 조립이나 재포장한 형태, 또는 제조가공 등을 거친 새로운 제품의 형태로도 반출이 가능하다. 물품은 FTZ 지역에 무기한 보관 될 수 있으며, 미국 내수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반출 시점에서 수입관세 및 제반 비용이 발생하고,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FTZ 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기존에 사용하는 창고 또는 공장 등을 용도(보관 또는 제조)에 따라 관할기관(FTZ Board)으로부터 지정 받는 것이다. FTZ 로 지정받은 후에 회사는 창고 및 공장 부지의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을 활성화(activate)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Activation 의 요건으로 회사는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과 국내에서 반입되는 물품을 분리해서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FTZ 활용 시 비용절감의 혜택이 상당할 수 있으나 회사 실정에 맞는 Activation 구역 설정, 관리시스템 설치 및 유지비용에 대한 cost-benefit 등의 분석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이 경 연 (Lee, Kyung Y)
Manager/ICS – Trade and
Customs
kylee@kpmg.com
213-955-8357

위에 소개해 드린 제도 또는 이외에 관세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KPMG 한국부의 각 지역(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Net

For comments or questions, please
contact

Kristie Kang
Tel: 213-817-3161
kjkang@kpmg.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 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up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In specific circumstances, the services of a competent professional should be sought. The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here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y represent the views and opinions of KPMG LLP.

About KPMG

KPMG LLP is the audit, tax and advisory firm that has maintained a continuous commitment throughout its history to providing leadership, integrity and quality. The Big Four firm with the strongest growth record over the past decade, KPMG turns knowledge into value for the benefit of its clients, people, communities and the capital markets. Its professionals work together to provide clients access to global support, industry insights, and a multidisciplinary range of services. KPMG LLP (<http://www.us.kpmg.com/>) is the U.S. member firm of KPMG International. KPMG International's member firms have nearly 145,000 professionals in 152 countries.

가장 오랜 역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KPMG 한국부는 앞서가는 한국 기업들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udit & Assurance Based Advisory Services
- Tax Compliance and Consulting Services
- Transfer Pricing Compliance and Planning Consulting
- Corporate Transaction (M&A, IPO, etc.)
- Information & Risk Management Consulting

Korean Practice Offices

New York

345 Park Avenue
New York, NY 10154

박종연: Tel: 212-872-6696, cpark@kpmg.com
박상환: Tel: 212-872-6993, shpak@kpmg.com
이용근: Tel: 212-872-7954, guslee@kpmg.com
이경렬: Tel: 212-872-5658, kklee@kpmg.com

Los Angeles

355 S. Grand Avenue
Los Angeles, CA 90071

김준경: Tel: 213-955-8514, jkkim@kpmg.com
김창욱: Tel: 213-593-6683, cpkim@kpmg.com

Atlanta

303 Peachtree Street Suite 2000
Atlanta, GA 30308-3210

강훈규: Tel: 404/222-3580, hoonkang@kpmg.com
홍정기: Tel: 404-658-5100, chong@kpmg.com

삼정 KPMG Seoul

10th FL. STAR TOWER
737 Yeoksam-dong Kangnam-gu
Seoul, 135-984, Korea

대표: 김교태 Tel: 82 (2) 2112-0400, kkim1@kr.kpmg.com